

논란 없는 원리를 재고함*

양 은 석

【국문요약】 최근 이병덕 교수의 논란 없는 원리(Uncontested Principle)의 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송하석, 최원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들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논증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을 먼저 이 글에서 밝히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다음으로 대안 논리(alternative logic)의 관점에서 볼 때 논란 없는 원리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연역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필요함을 보인다. 즉 특정 조건이나 제약 하에서만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논란 없는 원리, 대안 논리, 연역, 귀납

접수일자:2012.07.09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2.09.09 게재확정일: 2012.09.11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논문이 교정되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최원배가 지적하듯 “잭슨은 일상적인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이 진리함수적 조건문(truth-functional conditional)으로 이해되는 질료적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을 함축한다는 원리를 ‘논란 없는 원리’(the uncontested principle, UP)라 불렀다(최원배(2011), p. 86).¹⁾ “만약 A이면 C”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 $A \rightarrow C$ ”로, 이에 대응하는 질료적 조건문을 “ $A \supset C$ ”로 표현하자. 논란 없는 원리는 다음이 언제나 성립한다는 논제에 해당한다.

$$(UP) A \rightarrow C \text{ 따라서 } A \supset C$$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이병덕은 이 원리가 추론주의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고(이병덕(2008), 각주 8 참조), 이는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송하석은 이와 관련된 논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송하석(2008), 4절), 이에 대하여 이병덕(2009)은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귀납의 경우를 들어 밝혔다. 최근 최원배(2011)는 이러한 대응에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병덕(2012)은 보다 자세한 논증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증을 펼쳤다. 이와 관련하여 송하석과 최원배는 논란 없는 원리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이병덕은 연역에서 정당하지만 귀납에 관한 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들의 논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연역적 정당성을 보이는 이들 논의가 잭슨(Jackson)의 논의를 크게 넘어서지 않고, (잭슨의 논의를 포함한) 이들 논의만으로는 논란

¹⁾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passage principle)’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Jackson(1987), pp. 4-5를 참조할 것.

없는 원리가 연역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몇몇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역에 관한 한 이 원리가 정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논리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²⁾

2. 송하석(2008)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통해 이병덕(2008)의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논의에 반론을 제기한다.³⁾

2)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심사 위원들의 주요한 지적들이 있었다. 한편으로 심사 위원들의 일부 지적은 이 글의 기본 논지와 무관하거나 불충분한 이해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지적들은 지적의 다양성으로 인해 한편의 글에서 지적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의 지적과 관련하여 필자가 크게 답변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고전적 귀결 관계와 (연역적) 귀결 관계는 전자가 후자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 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과 이 점에 비추어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보다 일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 심사자는 매우 좁은 의미의 고전적 귀결개념에 준하는 진리보존성을 통해 필자의 논의를 비판하였다.) 둘째는 직설법 조건문에 고전적 진리 조건을 적용하여 (UP)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흥미롭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료적 조건문이 고전적 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직설법 조건문에 같은 진리조건을 적용하면 직설법 조건문으로부터 질료적 조건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빠른 사실이다. 필자가 순환성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즉 직설법 조건문에 고전적 진리치를 할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고려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이다. 필자가 질료적 조건문과 직설법 조건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나머지 메타 언어에 고전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3절 논의에서 “너무 편향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심사위원들로부터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필자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3) 필자는 표현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전적) 부정과 연언을 각각 \neg ,

이병덕은 “ $\neg R$ 로부터 A로의 추론이 정당하다고 해도 R 또는 A라는 것이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병덕(2008), p. 154). 그러나 추론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A는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에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은 정당한 추론이 아니다. 즉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에는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있다면, $(A \wedge \neg C)$ 는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추론주의자들은 다음 논증1)을 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논증1) $(A \rightarrow C) / \therefore \neg(A \wedge \neg C)$

그런데 위 논증의 결론은 $(A \supset C)$ 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그러므로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을 받아들이면 논증2)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증2) $(A \rightarrow C) / \therefore (A \supset C)$

결국 추론주의를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그리고 추론주의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논란 없는 원리를 거부하려면, 적어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주장 가능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질료적 조건문은 주장가능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추론주의자들의 설명대로 $(A \rightarrow C)$ 가 주장 가능하다면, A로부터의 C로의 추론이 정당해야 하는데, 이는 A가 참이라고 할 경우, C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A \supset C)$ 도 주장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송하석(2008), pp. 174-75).

이에 대하여 이병덕(2009)은 이러한 비판이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단지 연역적으로 타당한 경우만

\wedge 로 표현한다. 아울러 각 인용에서도 필자가 사용하는 표기법으로 바꾸어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이병덕(2009), p. 140), 귀납적 사례를 들어 논란 없는 원리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인다(이병덕(2009), 3절 참조).

필자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병덕(2009) 답변의 가장 큰 특징은 적어도 연역에 관한 한 송하석(2008)의 논증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병덕은 연역에 관한 한 송하석(2008)의 논증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송하석(2008)의 논증은 ‘연역적’이라는 것과 (고전적 의미에서) ‘진리 조건적’이라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고, 이병덕은 (2009)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재고 없이 송하석의 논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 없는 원리를 거부하는 추론주의적 설명에 대한 송하석(2008)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논란 없는 원리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는 데 흔히 진리 조건이라고 불리는 고전적 의미의 진리 함수 원리 내지 귀결 관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이 논리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A \rightarrow C$)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A는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에는 A로부터 C로의 추론은 정당한 추론이 아니다. 즉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에는 ($A \rightarrow C$)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와 “요컨대 ($A \rightarrow C$)를 주장할 수 있다면, ($A \wedge \neg C$)는 거짓이어야 한다.”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굵은 글씨로 표현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송하석은 $A \rightarrow C$ 의 주장가능성을 고전적인 설명 방식 즉 참, 거짓, 부정에 관한 고전적 의미의 진리 조건 방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를 $A \wedge \neg C$ 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A \wedge \neg C$ 가 거짓인 경우로 간주하며 $\neg(A \wedge \neg C)$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

4)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임.

우 그 조건문은 거짓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참이라는 혹은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 그 추론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하다는 설명에 해당한다. 이는 고전적 함의 내지 귀결을 설명하는 전형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송하석의 논증에서 실제로 보인 것은 $A \rightarrow C$ 의 주장가능성이라기 보다는 $A \supset C$ 의 주장가능성이다. (즉 $A \supset C$ 가 주장가능하다면 $\neg(A \wedge \neg C)$ 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가령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가 A, C가 과잉 결정된 즉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경우이라면 $A \rightarrow C$ 가 성립할 수도 있다.⁵⁾)

위 논증이 유의미하려면 송하석은 적설법 조건문 즉 $A \rightarrow C$ 가 왜 진리 조건적 방식을 통해 (즉 “A가 참이고 C가 거짓일 경우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없다”를 통해) 설명되어야 혹은 설명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송하석은 그에 관한 적절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A \rightarrow C$ 가 (고전적 의미의) 진리 조건에 따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비고전 특히 대안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A \rightarrow C$ 의 주장가능성은 A가 참이고 C가 거짓이 아닌 경우 달리 표현하면 “A가 참이고 C가 거짓인 경우 $A \rightarrow C$ 를 주장할 수 없다”를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송하석은 이것이 질료적 조건문 즉 $A \supset C$ 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는 전형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송하석(2008)의 고려와 달리 연역적이라는 것이 (설령 필요조건이라고 해도) 진리 조건적 즉 고전적 진리 함수를 통해 반드시 설

5) 한 심사자는 “필자가 송하석 선생님의 논증을 $A \rightarrow C$ 의 주장가능성은 $\neg(A \wedge \neg C)$ 인 경우에 대한 고려로 충분하다”고 송하석(2008)을 비판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필자의 논의를 잘못 이해한 데 기인한다. 필자도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송하석(2008)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문제삼는 것은 그러한 고려가 참, 거짓, 부정 등의 사용과 해석에 관한 고전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괄호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명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전 논리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겠지만, 대안 논리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 방식을 거부할 것이다. 그 이유는 고전적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기 힘든 보다 다양한 연역적 귀결 관계가 대안 논리에서 실제로 성립하기 때문이다(Beall & Restall(2006), Czelakowski(2001) 등 참조).⁶⁾ 이 병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연역적 문맥에서 송하석(2008)의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3. 최원배(2011)는 이병덕의 (2008, 2009)에서의 주장처럼 논란 없는 원리를 거부할 경우 전건 긍정식을 거부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다음의 논증을 통해 보인다.

이병덕의 주장대로 다음 논증이 부당하다고 해보자.

$A \rightarrow C$ 따라서 $A \supset C$

이는 전제가 참인데 결론은 거짓인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경우를 고려해 보자. 결론에 나오는 질료적 조건문은 전건 A가 참이고 후건 C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다. 따라서 이 결론이 거짓이라면 A와 C는 각각 참, 거짓의 진리값을 가져야 한다. ... 이 논증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병덕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더라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최원배(2011), pp. 87-88).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병덕과 같은 견해를 내세우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런 견해가 전건 긍정식(modus ponens)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 우리는 전체 조건문의 참과 전건의 참으로부터 후건의 참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방금 인정한 대로 전체 조건문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어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전체 조건문

⁶⁾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대안 논리 연관 논리, 퍼지 논리, 준구조 논리 등의 귀결 관계를 참조할 것.

이 참이 된 경우라면, 우리는 조건문의 참과 전건의 참으로부터 후건의 참을 보증할 수 없게 된다. ...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은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며, 둘째,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임을 인정하게 되면 전건 긍정식은 부당한 논증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결국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은 전건 긍정식이 부당한 논증이라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최원배(2011), p. 90).

아울러 아래와 같은 프리스트의 논증 예(Priest(2001), p. 14)를 들어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 \rightarrow C$ 를 전제라고 하자. 그런데 A 가 참이거나 $\neg A$ 가 참일 것이다. A 가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건 긍정식에 의해 C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C 로부터 우리는 선언도입규칙에 의해 $\neg A \vee C$ 를 얻을 수 있고, 이는 $A \supset C$ 와 동치이다. 이번에는 $\neg A$ 가 참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로부터 선언도입규칙에 의해 역시 $\neg A \vee C$ 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다시 $A \supset C$ 와 동치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전제로부터 $A \supset C$ 를 얻을 수 있으며, 결국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한다(최원배(2011), pp. 90-91).

이병덕(2012)은 최원배(2011)의 비판에 대하여 그의 비판이 자신의 견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는 직설법 조건문을 대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A \rightarrow C, A. \therefore C$)과 질료적 조건문을 대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A \supset C, A. \therefore C$) 모두를 받아들이며 단 이러한 식이 연역 추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지시킨다(이병덕(2012), pp. 275-76). 아울러 (2009)에서와 마찬가지로 귀납의 경우를 들어 “ $A \rightarrow C$ ”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 A ’가 참이면서 ‘ C ’가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논란 없는 원리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이병덕

(2012), 2-4절 참조).

필자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병덕 (2012)에서의 답변은 (2009)에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귀납적으로 정당화 되지 않는 이유를 좀더 분명히 밝혔을 뿐이다. 아울러 (2012)의 논의를 통해 연역에서 전건 긍정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연역에 관한 한 최원배(2011)의 논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2절에서 지적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를 짚어 보자.

최원배(2011)의 첫 번째 논증 즉 “논란 없는 원리를 거부할 경우 전건 긍정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논증은 위 인용에서 최원배 스스로 정리하고 있듯이 ‘논란 없는 원리의 부정은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의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 전체 문장이 참이 되는 경우를 허용한다’를 보이는 논증⁷⁾과 ‘이를 허용할 경우 전건 긍정식이 부당한 논증이 된다’는 것을 보이는 논증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논증들로 구성된 첫 번째 논증과 그것에 바탕을 둔 두 번째 논증은 언뜻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증들 또한 여전히 고전적 진리 조건 내지 귀결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첫째 논증과 관련하여 최원배는 논란 없는 원리 (UP)가 부당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어야 하고 이때

7) (UP) 즉 “ $A \rightarrow C$ 따라서 $A \supset C$ ”가 부당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어야 하고 이때 결론이 거짓이기 위해서 전건 A 가 참이고 C 가 거짓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리 함수적으로 볼 때, 전제 $A \rightarrow C$ 가 참이기 위해서는 A 가 참, C 가 거짓이지만 $A \rightarrow C$ 가 참인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

8) 각주 7)의 논증을 받아들일 경우, 전건 긍정식 “ $A \rightarrow C$, A 따라서 C ”는 두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기 때문에 부당한 논증이 된다.

결론이 거짓이기 위해서 전제 A가 참이고 C가 거짓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A가 참, C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전제 $A \rightarrow C$ 가 참이 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내지 고려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고전적(classical)이다. 첫째는 부당성(invalidity)이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에 대한 고려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서 사용되는 ‘참’, ‘거짓’ 개념이 고전적 개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전적 참, 거짓 개념은 한 진술이 참일 경우 그것의 부정은 거짓이며 이 둘이 상호 양립할 수 없다는 점, 즉 A란 진술과 그것의 부정 $\neg A$ 의 연언 $A \wedge \neg A$ 가 항위라는 점에서 상호 배타적이다. 즉 항위로서의 모순된 진술(과 동치인 진술)이 아닌 한 한 진술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귀결 개념에 해당하는 타당성(부당성) 개념은 이러한 개념에 의존하여 정의된다. 보다 정확히 최원배(2011)처럼 부당성을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경우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성을 전제가 거짓이거나 결론이 참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고전적 귀결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귀결 개념은 참, 거짓에 관한 고전적 진리 조건 개념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위 점들이 고전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의 상황에서 잘 드러난다. (UP)에서 A가 참이면서 거짓인 과잉 결정된 상태 즉 A가 참이면서 A의 부정도 참인 정보 상태에 있고 C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자. 그리고 과잉 결정된 진술들로 이루어진 조건문의 전제 $A \rightarrow C$ 의 전체 진리치는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리치를 결론에서 보존할 때 타당하다고 하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과잉 결정된 참을 e로 그렇지 않은 참을 T로 표현하자. (과잉 결정된 참 e와 그것의 부정 \bar{e} 은 항위에 해당하는 진리치 \perp 와 구별된다.) 타당성은 ‘전제가 T의 값

을 가질 경우 결론 또한 T의 값을 갖는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UP)의 전제 $A \rightarrow C$ 의 전체 진리치는 거짓이 아닌 참 즉 T의 값을 갖는다. 문제는 결론 $A \supset C$ 의 전체 진리치에 어떤 값을 할당할 것인가이다.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전제에서와 같은 방식의 진리치를 결론에 할당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결론의 전체 진리치는 $\neg A \vee C$ 의 진리치이기 때문에 과잉 결정된 참 즉 e의 값을 갖는다. 이 경우 (UP)는 (전제가 T의 값을 갖는 반면 결론은 e의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결론 $A \supset C$ 는 고전적 진리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 전건과 후건에 과잉 결정된 진리치를 할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최원배(2011)의 논증이 현재의 논증만큼이나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즉 결론 $A \supset C$ 의 전건과 후건에 배타적 진리치를 할당하고 그 진리치에 맞춰 전제 $A \rightarrow C$ 의 진리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제 $A \rightarrow C$ 의 전건과 후건에 과잉 결정된 진리치를 할당하고 그 진리치에 맞춰 $A \supset C$ 의 진리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편향적이다.⁹⁾ 왜냐하면 전제의 A, C에 과잉결정을 일으키는 진리치를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제의 A, C는 T이면서 \perp 인 진리치를 모두 가질 수도 있고 T, \perp 에 해당하는 값을 아예 진리치로 갖지 않을 수도 있다.¹⁰⁾ 즉 (대안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직설법적 조건문에서는 질료적 조건문과 달리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의 A에 T,

9) 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잉결정을 허용할 경우, 전제가 과잉 결정된 진리치를 가질 때 우리가 결론에 어떤 진리치를 할당할 수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결론이 고전 논리의 진리치를 가질 때 전제에 어떤 진리치를 할당할 수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이러한 진리치는 흔히 '과잉'과 '결여'로 간주되며, both를 나타내는 B와 neither을 나타내는 N으로 표현된다.

C에 \perp 만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가령 위의 e, δ 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원배(2011)의 논증이 고전적 진리 조건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두 번째 논증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 논증에서 최원배는 “선언도입규칙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이상, 전진 긍정식을 받아들이면 논란 없는 원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최원배(2011), p. 91)”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한 가지 간과된 사실은 위 논증이 배중률 즉 $A \vee \neg A$ 와 부정에 관한 한 완전한 (complete) 이론 즉 모든 문장 A에 대하여, $A \in T$ 또는 $\neg A \in T$ 인 이론 T를 허용할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둘째 논증은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일 때만 성립한다. 잘 알려진 대로 배중률은 직관주의 논리에서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원리이다. 실제로 최원배는 (2011)에서 첫 번째 논증에서 (배타적 참, 거짓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무)모순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 기초하여 둘째 논증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최원배(2011)는 둘째 논증에서 배중률과 (무)모순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증을 전개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논증은 고전적 진리 조건 개념에 의존하여 (UP)의 정당성을 보여준 것에 해당한다.

최원배(2011)가 둘째 논증에서 배중률과 (무)모순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근본 가정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근본 가정은 연역의 귀결 개념을 고전적 진리 조건 내지 귀결 개념으로 이해할 때 유의미하며, 대안 논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가정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즉 대안 논리의 입장에서 볼 때 최원배(2011)의 둘째 논증은 논란 없는 원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만족할만한 논증이 아니다.

4. 양은석은 (2011)에서 연관 함의와 관련하여 조건문과 함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던(1986)의 1장 2절 『조건문과 함의』에서 던은 앤더슨과 벨납이 1975년의 저술에서 다음 두 형태의 문장이 문법적 차이 이상의 아무런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는 ‘상응 논제(Correspondence Thesis)’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고 본다(Dunn(1986), p. 121).

(12) 만약 A라면, B.(If A, then B.)

(13) A는 B를 함의한다.(That A implies that B.)

던이 비록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12)에서 (13)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지만 (13)에서 (12)는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즉 (13)이 성립할 경우 (12)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Dunn(1986), pp. 121-23 참조). 이러한 논의에서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건문은 보통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조건문(ordinary everyday conditionals)이다. 메이어는 그러한 조건문을 보다 명시적으로 직설법 조건문으로 간주하고 던과 마찬가지로 (13)에서 (12)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Mares(2004), pp. 128-29). ... 이들 모두의 논의에서 분명한 점은 연관 함의문이 연관성을 반영한 직설법 조건문 즉 연관 직설법 조건문(relevant indicative conditionals)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양은석(2011), pp. 151-52).

위 진술은 연관 함의문을 연관 직설법 조건문으로 간주하는 것을 연관논리학자들이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에 해당한다. 필자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연관논리학자들 사이에서 인용의 (13)에서 (12)가 성립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함의문을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표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¹¹⁾ 그 점에서 필자는 적어도 이론(theory)에 사용된 함의

¹¹⁾ 한 심사자가 (13)에서 (12)가 성립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12)에서 (13)이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를 직설법 조건문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

문들을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안 논리를 고려하면 즉 대안 논리의 이론에서 사용되는 함의문들을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간주할 경우, 논란 없는 원리는 연역 논리에서도 정당성을 보장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5절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UP)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기로 하겠다.

(UP)는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 사이의 귀결 관계 내지는 함의 관계를 다루는 메타 원리에 해당한다. 보통의 경우 메타 진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는 고전 논리이다. 문제는 대상 언어에서 질료적 조건문을 결론으로 사용하고 (그러한 사용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메타 언어의 논리로 고전 논리를 사용할 경우 대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논리를 메타 언어의 논리로 다시 사용하는 순환 논증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UP)의 대상 언어 질료적 조건문 해석이 고전 논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UP의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고전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특히 직설법 조건문에 고전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질료적 조건문의 해석 원리 넓은 의미로 고전적 귀결 관계의 원리를 (직설법 조건문에) 다시 사용하는 순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UP)의 “따라서” 즉 “∴”로 기호화되는 부분의 고전 논리에 의거한 해석을 지양하면서 (UP)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한 방법은 전제 $A \rightarrow C$ 를 한 논리 체계 L 의 정리 또는 타당한 식으로 보고 $A \supset C$ 를 고전 논리 체계 CL 의 정리 또는 타당한 식으로 보는 것이다. ‘ $\vdash_L A$ ’가 ‘ A 가 논리 L 의 정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자. 두 논리 체계 L_1, L_2 에 대하여, L_1 의 정리가 L_2 의 정리일 때 L_1 은 L_2 보다 약하다(*weak*)고 하고 L_2 는 L_1 보다 강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왜 (12)에서 (13)이 성립해야하는 이유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따로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strong)고 하자.¹²⁾ 직관주의 논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안 논리에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고전 논리 CL보다 약한 체계 L에 대하여,

$$(UP^*) \quad \vdash_L A \rightarrow C \quad \text{따라서} \quad \vdash_{CL} A \supset C$$

(UP)가 (UP*)를 의미한다면 대안 논리학의 옹호론자들도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잭슨이 논란 없는 원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는 데 정리를 사용하여 논란 없는 원리의 전제, 결론의 관계를 고려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 논란 없는 원리와 함께 그것의 역 즉 이행 원리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이는 데 정리에 해당하는 예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행 원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집사가 그것을 했거나 하인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집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인이 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집사와 하인 둘 다 무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는 집사가 무고하다면 하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Jackson(1987), p. 5).

“집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인이 했다.”란 문장은 논리적 원리로 간주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장들을 한 논리 체계의 이론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UP)를 다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론 T와 문장 A, C에 대하여,

12) 일반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 연구자들은 약한 논리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내지 함의는 고전 논리에서 사용하는 조건문 내지 함의보다 강하다고 표현하고, 준구조 논리를 중심으로 한 대안 논리 연구자들은 약하다고 표현한다. 필자는 전자의 방식을 따라 강하다는 표현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UP**) $T \vdash_L A \rightarrow C$ 따라서 $T \vdash_{CL} A \supset C$ ¹³⁾

5. 비고전 논리 체계 L에 대하여 (UP**)가 성립한다면, 비고전 논리학자들 또한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대안 논리에 비추어 볼 때 (UP**)가 반드시 참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설령 정당한 원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4절에서 언급한 순환성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대신 몇몇 제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안 논리는 고전 논리에서 정리인 것들 중 일부를 거부하는 논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논리 체계는 대신 보다 풍부한 언어를 다룰 수 있다. 가령 많은 준구조 논리들은 고전 논리의 항진 T , 항위 \perp 에 상응하는 논리 상황들 소위 대문자로 표현되는 \mathbf{T} , \mathbf{F} 뿐만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e , δ 에 상응하는) 상황들 소위 소문자로 표현되는 \mathbf{t} , \mathbf{f} 를 갖는다(Galatos et al.(2007) 참조). 연관 논리와 선형 논리에서는 고전 논리에서 사용되는 외연적(extensional)

13) 한 심사자는 필자가 $A \rightarrow C$ 를 한 체계의 정리로 보고 있다((UP*) 참조)고 하지만 이는 필자의 논문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 필자는 이 절에서 (UP*)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UP**)를 통한 검토에 부정적 시각을 보내고 대신 한 체계에서 (UP)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직설법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거나 흥미롭지 않은 논의를 제공하는데 그친다.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대안 논리에서 질료적 조건문에 해당하는 함의 내지 귀결을 갖지 않는 체계가 너무나 많아 그러한 체계에서 볼 때 (UP)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흥미롭지 않은 이유는 일부 논리 체계가 심사자의 주장대로 두 조건문에 상응하는 함의문들을 갖지만 이러한 경우 직설법 조건문이 질료적 조건문보다 강하기 때문에 (UP)가 성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즉 하나하나 한 설명이라는 것이다. 관련하여 심사자는 이 글이 연역적으로 정당한지 즉 (UP)의 연역적 반례를 고려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는 점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연언 \wedge 와 구별되는 내포적(intensional) 연언 $\&$ 를 가지며, 뿐만 아니라 다치, 퍼지 논리에서는 문장들에 참, 거짓 2치뿐만 아니라 3치(three values) 이상의 진리치를 할당할 수 있다. 또 진리 함수적 의미론을 갖지 않는 논리 체계들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실제로 (UP**)에서 ‘따라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직설법적 조건문 연구자들은 논란 없는 원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이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 보다 강하다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질료적 조건문보다 약할 수 없다는 원리로 간주한다(Jackson(1987), pp. 6-7 참조). 무엇보다도 진리 조건적 혹은 진리 개념에 바탕을 둔 의미론을 갖지 않는 대안 논리의 연구자들은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서 논란 없는 원리는 연역 논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즉 별다른 조건 없이 연역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원리라고는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논란 없는 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직설법적 조건이 진리 조건을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질료적 조건문보다 강하다(약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송하석(2008), 최원배(2011)의 논증은 고전 논리에 기반을 둔 진리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서 대안 논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L에서 A, C가 각각 비논리 상황 f , t 라고 하자. 여기서 사용되는 t , f 가 고전 논리의 상황 T, F와 구별된다고 하자. 이 경우 (UP**)의 전제 $T \vdash_L A \rightarrow C$ 는 $T \vdash_L f \rightarrow t$ 에 해당한다. 이는 3절의 과잉결정의 상황처럼 결론 $T \vdash_{CL} A \supset C$ 를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를 문제를 야기한다. 상황 t , f 가 고전 논리의 상황 T, F와 구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문자와 대문

자 상황들의 구별됨을 강조할 경우 결론에 진리치 할당은 고사하고 결론 $T \vdash_{CL} A \supset C$ 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한 가지 방법은 L에서의 상황 t, f 가 CL에서 상황 T, F 와 같다는 점 즉 고전 논리에서 $t = T$ 이고 $f = F$ 라는 점에 착안하여 L의 언어를 CL에서의 언어로 번역하여 논란 없는 원리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L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상응하는 CL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의 대치를 통해 (UP**)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이를 고전 논리 언어로의 번역 조건(<조건1>)이라고 하자.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위 경우의 전제, 결론은 다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T \vdash_L f \rightarrow t \text{ 따라서 } T \vdash_{CL} F \supset T$$

이 경우 결론 $F \supset T$ 의 진리치가 참이기 때문에 전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하지만 <조건1>만으로는 (UP**)가 정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전제의 A가 t 이고 C가 f 인 경우 즉 $T \vdash_L t \rightarrow f$ 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많은 대안 논리에서 $t \rightarrow f$ 는 f 와 동치이다. 이 경우 전제, 결론은 다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T \vdash_L t \rightarrow f \text{ 따라서 } T \vdash_{CL} T \supset F$$

그렇다면 이 논증은 $t \rightarrow f$ 는 f 와 동치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한 타당한 논증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전제가 (거짓에 상응하는) f 와 동치이고 결론 또한 고전 논리에서 (거짓에 상응하는) F 와 동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퍼지 논리 체계 IUML(Involutive uninorm mingle logic)의 경우를 고려해 보

자.14) 고전 논리의 쌍조건문을 ‘≡’로 표현하자. 마찬가지로 위 경우는 동치 $(t \leftrightarrow f) \leftrightarrow f, (T \supset F) \equiv F$ 로 인해 다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T \vdash_L f \text{ 따라서 } T \vdash_{CL} F$$

이 논증은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IUML 체계는 $t \leftrightarrow f$ 를 공리로 갖기 때문에 전체는 t 와 동치이다. 그리고 t 는 타당한 식들의 연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는 (e에 해당하는) 참인 진리치를 갖는다. 하지만 결론은 (항위 \perp 로서의) 거짓이다. 즉 (e에 해당하는) 참을 보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증은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가 왜 야기되는 지는 IUML 체계의 공리 $t \leftrightarrow f$ 가 CL에서의 공리로 번역될 수 있는 지를 점검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건1>에 따르면 A가 t , C가 f 인 경우, 다음의 (UP**)가 성립한다.

$$T \vdash_L t \leftrightarrow f \text{ 따라서 } T \vdash_{CL} T \equiv F$$

널리 알려진 대로 고전 논리에서 $T \equiv F$ 는 정리가 아니다. 즉 $t \leftrightarrow f$ 는 IUML의 정리이지만 $T \equiv F$ 는 CL에서 정리가 아니다. 따라서 CL은 IUML의 공리적 확장 체계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앞 절에서처럼 L을 CL보다 약한 체계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전 논리의 강함 조건(<조건2>)이라고 하자. <조건2>는 전체의 L로 IUML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한다. (UP**)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IUML과 같은 체계를 L에 포함시키는 것을 배제할

14) 이 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Metcalfe & Montagna(2007)을 참조할 것.

수 있어야 한다.

<조건1>과 <조건2>만으로는 사실 아직 (UP**)가 충분히 정당화 되지 못한다. 다음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L이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L의 이론이 $(A \rightarrow C) \rightarrow (A \wedge \sim C)$ 를 포함하는 이론이고 여기서의 부정 \sim 이 드모르간 부정이라고 하자.¹⁵⁾ 이를 (UP**)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 \vdash_L (A \rightarrow C) \rightarrow (A \wedge \sim C) \quad \text{따라서 } T \vdash_{CL} (A \supset C) \supset (A \wedge \neg C)$$

이 경우 전제가 (e에 해당하는) 참이더라도 결론은 (항위 \perp 로서의)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이는 C를 A로 대치할 경우 다음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T \vdash_L A \wedge \sim A \quad \text{따라서 } T \vdash_{CL} A \wedge \neg A$$

사소하지 않으면서 즉 모든 문장들을 참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부정에 관한 한 비일관적인 이론 T 즉 $A, \sim A \in T$ 인 A가 존재하는 이론 T를 받아들이는 체계 L에서는 위 전제가 성립한다.¹⁶⁾ 하지만 고전 논리에서는 위 결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A \wedge \neg A$ 는 항위 문장이라 그러한 문장을 갖는 이론 T는 사소한 이론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L에서 사소하지 않은 이론은 CL에서 사소하지 않은 이론으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사소하지 않은 고전 논

15) 드 모르간 부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은석(2007), Anderson & Belnap(1975), Dunn(1986), Galatos et al.(2007) 등을 참조할 것.

16) 사소한(trivial) 이론 T는 $F \in T$ 인 즉 모든 문장을 허용하는 이론이고, 그렇지 않은 이론은 사소하지 않은 이론이다.

리 이론으로의 번역 조건(<조건3>)이라고 하자. <조건3>은 전제의 논리 L에서 $A \wedge \sim A$ 과 같은 문장을 이론에 포함하는 것을 배제한다.

6. 필자의 판단으로는 (UP)가 (UP**)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UP**)에 <조건1>부터 <조건3>까지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추가되어야 논란 없는 원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잭슨, 송하석, 최원배 등이 제시한 정당화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고전적 참, 거짓, 부정 개념에 의존하여 직설법 조건문 사용의 정당성을 고려하는 순환 논증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논증이 못된다. 아울러 그러한 논증은 대안 논리학자들이 동의할만한 논증 방법이 아니다.

논란 없는 원리가 연역논리학자들에게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의 정당화가 좀 더 폭넓은 논리학자들이 동의할만한 정당화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에서와 같은 제약 조건이 없이는 연역적 정당성을 말하기 어렵다. 이병덕의 논의로 야기된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는 논란 없는 원리의 연역적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¹⁷⁾

17) 한 심사자는 (UP)가 일상어에 관한 고려라는 점을 들어 (UP**)와 같은 형식 체계를 이용한 필자의 고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직설법 조건문은 일상적 조건문이지 형식화된 언어의 문장이 아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UP)는 일상 언어로 표현된 주장이지, 연역적으로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다. 여기서 연역적 정당성은, 우리의 논의의 'A→C'가 성립하는 이유가 'A ∴ C'가 연역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자의적으로 한정시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첫째, 많은 대안 논리들 특히 철학적 논리학이라고 불리는 대안 논리들은 일상어에서 사용되는 조건문, 부정, 연언, 선언 등이 고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제시된 논리학이라는 것이다. 즉 형식 언어를 다룬다는 것이 일상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둘째, (UP)가 연역적으로 정당

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글의 목적과 무관해 보인다. 셋째, 심사자가 사용하는 연역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의 연역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사자는 고전적 연역정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어 연역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데 연역 정리 혹은 연역 정리에 준하는 것이 어떻게 연역적 정당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필자는 모르겠다. 아울러 “자의적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심사자는 (UP)의 문제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어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글의 목적과 무관해 보인다. 아울러 일상어의 문제라는 것은 일상어에서 우리가 질료적 조건문을 사용하는 지에 관해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만한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참고문헌

- 송하석(2008),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론: 성향적 분석과 추론주의적 설명에 관하여”, 『철학적 분석』 18호, pp. 167-177.
- 양은석(2007), “Algebras and Semantics for Dual Negations”, 『논리연구』 10(1), pp. 1-23.
- 양은석(2011), “직설법적 조건문과 연관 함의”, 『철학적 분석』 23호, pp. 139-165.
- 이병덕(2008),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17호, pp. 135-164.
- 이병덕(2009),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과 송하석 교수의 반론”, 『철학적 분석』 19호, pp. 139-147.
- 이병덕(2012),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 『논리연구』 15(2), pp. 273-292.
- 최원배(2011), “논란 없는 원리를 둘러싼 최근 논란”, 『논리연구』 14(3), pp. 85-99.
- Anderson, A. R., and Belnap, Jr., N. D.(1975), *Entailment*. vol. 1.,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all, J. C. and Restall, G.(2006), *Logical Plu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Czelakowski, J.(2001), *Protoalgebraic Logics*, Trends in Logic, vol. 10. Kluwer.
- Dunn, J. M.(1986), “Relevance logic and entailment” in *Handbook of Philosophical Logic*. vol. 3, D. Reidel Publishing Company, pp. 117-224.
- Galatos, N. et al.(2007), *Residuated lattices: an algebraic glimpse at substructural logics*, Amsterdam. Elsevier.
- Jackson, F.(1987), *Conditionals*. Oxford: Basil Blackwell.

Metcalf, G. and Montagna, F.(2007), “Substructural Fuzzy Logics”, *Journal of Symbolic Logic*, 72, pp. 834-864.

Priest, G.(2001), *An Introduction to Non-Classical Logic*,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전북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eunsyang@jbnu.ac.kr

Uncontested Principle revisited

Eunsuk Yang

After Byeongdeok Lee(2008) argued against the so-called uncontested principle (UP), Song(2008) and Choi(2011) gave arguments against Lee(2008) and instead for UP. One important point to mention in their arguments is that they all accept that UP is justifiable in deduction. First, I show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ir arguments. Next, I show that UP itself is not justifiable in deduction; it is only justifiable under some (restrictive) conditions.

Key words: Indicative conditionals, Material conditionals, Uncontested principle, Deduction, induction